

2022년 1월

## NFT 관련 주요 현안 (3)

김·장 법률사무소의 핀테크·가상자산팀에서는 최근 부각되는 NFT 와 관련된 제반이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NFT 게임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 관련 법적 이슈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I. 개관

블록체인 게임으로 각광 받았던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의 인기에 이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위메이드의 “미르4”가 글로벌 동시 접속자 130만명 이상을 돌파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업계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앞다투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업계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 해소되지 않은 법적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아이템의 NFT 민팅이 가능한 게임물들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모두 등급분류취소 및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 중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하에서는 NFT 또는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에 어떠한 법적 이슈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II. 블록체인 게임의 법적 이슈

#### 1. 사행성 규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행성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게임산업법’ 제2조제1의2호). 또한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제작, 배급, 제공업자 등)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 게임산업법에 따른 사행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관련 게임물의 등급 분류가 취소 또는 거부되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게임위는 NFT나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다수의 게임물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취소 또는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미르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사행성 규제 이슈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환전 규제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하 “환전 규제”).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환전 규제의 대상을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틱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 규제는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환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9년 환전 규제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리니지”에서 얻은 게임머니인 “아덴”이 우연적 요소보다는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때에는 법령, 판례 등에 비추어 게임의 종류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환전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게임 관련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만약 개별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때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편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폭넓게 정의되어 있고,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예외 사유인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NFT에 내재된 권리, 용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입장이므로,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해당 여부,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NFT 게임 관련 IP 이슈

NFT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캐릭터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 게임사에서 이용자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IP 측면에서 관련자들 간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NFT로 민팅한 경우, 게임사는 이용자가 해당 NFT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NFT를 SNS에 올리는 등 비상업적인 목적의 활용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NFT와 해당 아이템, 캐릭터에 대한 폭넓은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를 미리 이용약관 등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와 관련된 IP 쟁점은 지난 번 “NFT 관련 주요 현안” 제2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5. 해외 출시 블록체인 게임의 이슈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법상 규제 이슈들을 해소하기 어려워 최근 해외에서 현지 법인을 통하여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게임 규제뿐 아니라 가상자산, NFT 발행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금융규제 등 현지 법률이나 한국

법률에 따른 여러 법적 이슈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게임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게임 아이템을 민팅한 NFT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이용자 간 그 NFT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해외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NFT의 현지법상 법적 성격, NFT의 발행, 보관, 이전, 교환·매매의 중개와 이와 연계된 가상자산의 보관, 이전 교환·매매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상 라이선스 이슈 및 금융관련법령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국가에 대한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NFT로 민팅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NFT를 판매하면서 NFT 취득자에게 여러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NFT의 발행, 판매, 매매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증권 관련 규제나 외국환 규제 등 관련 법률 이슈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I.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려면 국내법 관점에서는 게임산업법, 특정 금융정보법 등에 따른 규제 검토가 필요하고, 해외 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규제 검토는 물론이고 현지 법률상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서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게임을 디자인하고 국가별 게임 출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 주체, 관계 법인 및 이용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상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 출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 변호사

## 은현호

02-3703-1068  
hheun@kimchang.com

## 성범규

02-3703-1711  
bumkyu.sung@kimchang.com

## 김준영

02-3703-1824  
joonyoung.kim@kimchang.com

## 김계정

02-3703-4550  
gyejeong.kim@kimchang.com

## 나덕중

02-3703-1564  
dukjoong.na@kimchang.com

## 김영준

02-3703-4640  
youngjoon.kim1@kimchang.com